제주콘텐츠진흥원

2025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 사업안내서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2025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 사업안내서

해외 전시 및 마켓 참가 지원을 통하여 지역 애니메이션 기업의 IP 유통망을 다각화하고, 지역 애니메이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제작 공정 단계별 지원체제 구축
○ 지역 애니메이션 기업의 IP 유통망 다각화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지역 애니메이션 콘텐츠 사업성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명: 2025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세부 사업명: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사업
○ 사업내용: 해외 콘텐츠 전시·마켓 참가에 따른 비용 지원
※ 지원 항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은 참가기업 자부담
○ 지원규모: 총 3개 기업(기업당 5,000천원, 총 15,000천원)
※ 전시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정산검토 시행, 부가세 제외 비용 환급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5.11.30.
○ 본공고기간: 2025.6.5.(목) ~ 2025.6.19.(목), 15일간
○ 본접수기간: 2025.6.13.(금) ~ 2025.6.19.(목) 14:00까지
○ 추가공고기간: 2025.6.20.(금) ~ 2025.6.27.(금), 8일간
○ 추가접수기간: 2025.6.23.(월) ~ 2025.6.27.(금), 14: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ee@ofjeju.kr)

☐ 추진일정

6월	⇒	6월	⇒	6월	⇒	6월~11월
사업공고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선정평가: 서류전형		협약체결		과제수행

참가 완료 후 15일 이내	⇒	결과보고서 제출 후	⇒	정산 완료 후	⇒	지원금 지출 후
결과보고서 제출		보고서 검토 및 정산 • 지출내역 적절성 • 증빙서류 검토 등		확정지원금 지출		사후관리

※ 위 일정은 신청서 접수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내용 상세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지사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애니메이션업 신고를 필한 ‘애니메이션업자’

※ 도외기업과의 컨소시엄은 가능하나, 주관기업 본사(또는 지사)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참여기관은 최대 1개 업체 가능

※ 서식 <신청자격 확인서>의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됨

지원 및 평가 제외

지원·평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1.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또는 자)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중인 기업(또는 자)
3.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징수한 금액을 체납한 기업(또는 자)
   ※ 기술료 등 징수액 미납부자 포함
4.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관리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기업(또는 자)
5.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기업(또는 자)
6. 주관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 목적, 제작범위,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③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지원규모

○ 지원내용: 해외 콘텐츠 전시·마켓 참가에 따른 비용 지원

※ 지원 항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은 참가기업 자부담

○ 지원금액: 총 3개 기업(기업당 5,000천원, 총 15,000천원)

지원내용	과제수	지원금액	총지원금	사업기간
해외 콘텐츠 전시마켓 참가 지원	3건	금5,000천원	금15,000천원	협약체결일 ~ 2025.11.30.

※ 타 기관 동일 과제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전시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정산검토 시행, 부가세 제외 비용 환급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과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상세내역

○ 지원 상세내역

<table>
<tr><th>항목</th><th>내용</th></tr>
<tr><td>지원분야</td><td>국산 애니메이션의 수출을 위한 해외 콘텐츠 전시·마켓 참가 비용 지원
※ 지원 항목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시회 참가 후 비용 정산 지급</td></tr>
<tr><td>지원대상</td><td>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지사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애니메이션업 신고를 필한 ‘애니메이션업자’</td></tr>
<tr><td>지원내용</td><td>해외 콘텐츠 전시마켓 행사 참가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 중 아래 항목 지원
<table>
<tr><td>참가비용</td><td>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비즈매칭 비용, 뱃지 구입비용</td></tr>
<tr><td>부스임차료</td><td>부스 공간 및 기본 부스 임차료</td></tr>
<tr><td>부스디자인비</td><td>부스디자인 제반비용
※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진행</td></tr>
<tr><td>장치임차료</td><td>전기, 통신 등 부대장치 임차료</td></tr>
<tr><td>운송료</td><td>소포비 등 물품 운반비용</td></tr>
<tr><td>홍보물제작비</td><td>홍보영상,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td></tr>
<tr><td>통역료</td><td>통역사 섭외 비용(진흥원 실비보상기준)</td></tr>
<tr><td>항공료</td><td>항공운임 : 이코노미(2등) 정액
※ 국내↔해외 항공권만 인정
※ 항공권 예매, 변경 등 수수료 불인정</td></tr>
</table>
※ 위의 내용 제외한 기타 비용은 참가기업 자부담</td></tr>
</table>

항목	내용
지원조건	○ 협약기간(2025년 11월 30일) 내 참여 완료 가능 전시회 ○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 ○ 선정 기업이 선 지출(완납), 정산 인정금액에 한하여 후 지급(사후지원) ○ 해외전시마켓에 한하여 참가비용을 지원하며, 전시참가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실적증빙서류(수출계약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정산보고서(비용증빙 등) 제출하여야 함. 미이행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체결, MOU체결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관 가능하며, 결과증빙(계약서 사본 등) 필수 ○ 단순 전시회 관람·견문을 목적으로 신청불가 ○ 타 기관 동일 과제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지정서류 일체 ② 기타 실적 증빙서류 - (보유시)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명서 사본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세청 발급 서류 · 수출입실적증명서, 구매확인서 등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발급서류 · 수출자의 공급계약서 및 납품증빙, 입금내역 등 매칭 증빙 가능 서류 ※ 단순 은행 거래 내역, 내부 재무회계 자료 등은 불인정하며, 계약서 등 매칭 통하여 실질 수출이 확인된 서류만 심사함 - 지식재산권, 품질인증 등 콘텐츠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상표, 서비스표 등록증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증 등
사업완료 후 청구시 제출서류	**[기간]** 참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제출서류]** ① 결과보고서 ※ 실적증빙서류(수출계약서, 수출실적증명서 등) 포함 ※ 수출계약서는 해당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등 조건과 서명 필수 ② 정산보고서 ※ 지원항목 해당하는 적격증빙에 한하여 부가세 제외 실비 환급
사업비 정산	○ 참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 결과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 등 발생한 경우 진흥원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항목	내용
지원제외	○ 사업비 산출에 있어 그 근거가 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가 아닌 경우 ○ 사업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협약기간(2025년 11월 30일) 내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경우
기타사항	○ 평가 과정에서 총 지원예산 범위 내 지원과제 개수 조정 가능하며, 적격 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과제는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순위와 명단은 비공개함
결과물 활용사항	○ 아래사항에 한하여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한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및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활용권한을 인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행사 및 홍보 등 활용 -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 책자 발간 등 - 제출한 스틸컷 등의 보도자료 배포 등 비상업적 활용 동의 ○ 과제 수행 결과물에 홍보를 위한 언론보도 시행 시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사실과 사업성과를 명시해야 함 ○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재)제주콘텐츠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지원 고지의무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표기·고지하여야 함 (예) 참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콘텐츠진흥원

Ⅲ 신청방법

○ 본공고기간: 2025.6.5.(목) ~ 2025.6.19.(목), 15일간
○ 본접수기간: 2025.6.13.(금) ~ 2025.6.19.(목) 14:00까지
○ 추가공고기간: 2025.6.20.(금) ~ 2025.6.27.(금), 8일간
○ 추가접수기간: 2025.6.23.(월) ~ 2025.6.27.(금), 14: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hee@ofjeju.kr)
- 서식 준수하여 작성, 제출 후 유선(064-766-0710) 접수확인 필수
○ 제출서류 (① 과제신청서 + ② 기타 실적 증빙자료)

① 과제신청서 지정서류 일체

연번	서류명	부수	형식	비고	제출형식
1	과제신청서	각 1부	PDF	30페이지 내외	[연번1~6] PDF 1개로 변환, 제목: 1.과제신청서(기업명).pdf
2	수행기관 소개서	각 1부	PDF		
3	정부지원 수혜실적	각 1부	PDF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작성	
4	사업비의 적정성	1부	PDF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PDF	참여인력 필수기재	
6	참여 제한 자가진단서	각 1부	PDF		
7	사업자등록증 및 애니메이션업 신고필증	각 1부	PDF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작성	[연번7~13] PDF 1개로 변환, 제목: 2.자격증빙(기업명).pdf
8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PDF	개인사업자 제외	
9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PDF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행분	
10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PDF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행분	
11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PDF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행분	
12	우대가점 자가진단서	1부	PDF	증빙 식별이 어려울 시 [서식 13] 활용	
13	기타 추가자료	-	PDF		
14	평가위원 추천표	1부	PDF		제목: 3.평가위원(기업명).pdf

② 기타 실적 증빙자료(자유양식)

○ 평가자료 정렬방법

기업자율형 해외마켓 참가지원	
○ 파일 압축(zip) 후 메일 제출 - 파일명: [해외마켓] 기업명_과제명 - 메일명: [해외마켓] 기업명	

○ 접수 등 관련 문의

문의부서	메일주소	전화번호
콘텐츠기반팀 담당자	hee@ofjeju.kr	064-766-0710

※ 메일 제출 후 전화를 통해 접수확인 필수

☐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삭제하여 작성

○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할 수 있으며, 증빙첨부서류 제출 가능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하여야 함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명기하여야 함

○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도식화 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과제신청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과제 신청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미비는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제출기한까지 제출 자료의 수정 및 보완 가능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되고,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함

○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필요시 과제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Ⅳ 심의평가 절차 안내

▢ 심의평가 절차

○ 서류평가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확인, 우대가점 여부 확인(필요시 현장 실사)
-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시행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우수성	ㅇ 콘텐츠 우수성, 잠재성, 활용현황 등 ㅇ 국내/외 수상이력, 시청률, 매출 등 성과	20
적절성	ㅇ 수출상대국(참가전시회) 선정사유 ㅇ 전시회 참가비용 적절성 ㅇ 콘텐츠의 타겟층이 명확하며, 구체적 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30
기대성과	ㅇ 전시품 적합성, 시장성 ㅇ 목표시장의 수출예상 성과 및 준비성	20
기업경쟁력	ㅇ 기업 기술력 및 콘텐츠&상품 품질 ㅇ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 역량 보유 현황	20
합 계		100
우대가점	제주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인프라 포함)	2
	인증 사회적기업(예비포함)	1
	제주콘텐츠진흥원 온라인캠퍼스 ESG 강의 이수기업	1

※ 평가항목과 배점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우대가점 증빙이 미비할 시 불인정

○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심의위원 후보자 풀에서 15인 후보 선정
- 과제신청자는 각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총 5개분야의 추첨항목 중 분야별로 1개씩, 총 5개 번호를 선택함
- 접수과제 전체의 추첨표 집계 후,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5인 선정

※ 다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앞순번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함.

○ 선정기준

- 심의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별 점수 집계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하며 나머지는 절사함

※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은 평정요소 득점의 총합으로 결정하며, 그 순서는 ①적절성 - ②우수성 - ③기대성과 - ④기업경쟁력 순으로 함

-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우대가점

분류	가점사항	부여가점
입주기업	제주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인프라 포함)	2점
ESG	인증 사회적기업(예비포함)	1점
	제주콘텐츠진흥원 온라인캠퍼스 ESG 강의 이수기업 * https://www.jcacampus.or.kr/ / * 대표자, 과제책임자 이수 필수	1점

※ 주관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우대가점 적용함

V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신청기업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이자 포함),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별표 1]

지원금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및 증빙사항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rowspan="2">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th><th rowspan="2">증빙사항</th></tr>
<tr><th>비목</th><th>세목</th></tr>
<tr><td rowspan="2">일반
운영비
(201)</td><td rowspan="2">사무
관리비
(01)</td><td>○ 일반수용비
1)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2)자료, 보고서 등 유인물의 제작(인쇄)비
3)현수막, 간판 등 안내(홍보물) 제작비</td><td><정산시 제출서류>
○ 내부 계획서(결재문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제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2개 이상 제출
○ 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검수확인서(조서)
<불인정 기준>
○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용역비용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예: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 결과물이 미 제출됐거나, 결과물이 용역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미미한 경우</td></tr>
<tr><td>○ 위원회 등 운영수당(전문가수당)
1)과제추진에 필요한 프리랜서 활용비용</td><td><정산시 제출서류>
○ 프리랜서 활용 계획서, 지출결의서
○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날인 필수)
○ 자문위원(전문가)의 경력을 알 수 있는 이력서
○ 전문가 통장사본 및 이체 확인증
○ 자문결과보고서(증빙사진, 회의록 필수)
○ 프리랜서 활용비용 편성 시, 계약서 및 세부적인 과업내용이 담긴 과업지시서 작성 필수
○ 프리랜서 활용비용 지출 시, 결과보고서(산출물 내역 및 증빙사진 필수), 검수조서 제출 필수
<table>
<tr><th>구분</th><th>유형</th><th>내용</th><th>지급액</th></tr>
<tr><td rowspan="3">통역료</td><td rowspan="3">외부인사</td><td>• 영어, 아랍어, 독일어
- 1시간까지 500,000원
- 6시간까지 800,000원
※ 6시간 초과 시
1시간당 : 150,000원</td><td>800,000원</td></tr>
<tr><td>• 일본어, 중국어
- 2시간까지 500,000원
- 6시간까지 700,000원
※ 6시간 초과 시
1시간당 : 100,000원</td><td>700,000원</td></tr>
<tr><td>•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리-인도네시아어
- 2시간까지 600,000원
- 6시간까지 800,000원
※ 6시간 초과 시
1시간당 : 100,000원</td><td>800,000원</td></tr>
</table>
<불인정 기준>
○ 사업지침 내 자문료 기준을 초과한 집행 건</td></tr>
</table>

구 분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증빙사항
비목	세목		
	행사 운영비 (03)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1)초청장, 현수막, 상패, 홍보물 등 제작 2)행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임차료 3)행사에 필요한 운영 등 용역비 4)행사개최에 필요한 일회성 시설물 설치비	**<정산시 제출서류>** ○ 계약서, 과업지시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비교견적서 ※ 5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 ○ 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검수확인서(조서) **<불인정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예: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 용역이 미완료됐거나, 과업에 비해 과도하게 미비된 경우
여비 (202)	**국외여비 (03)**	○ 국외출장애 필요한 경비 1)항공료 교통비(실비) ※ 항공료는 해당사업 참여인력(임직원)만 지원 가능	**<정산시 제출서류>** ○ 계좌이체 증빙 또는 사업비 카드 영수증 ○ 출장신청서(출장자, 출장지, 목적, 출장일정) ○ 출장결과보고서(출장자, 출장지, 목적, 일정, 소요비용, 증빙사진 포함) ○ 교통비 등 실재성증빙 - 교통비는 탑승권(or 모바일탑승권)과 영수증, 이티켓 **<불인정 기준>** ○ 교통비 등 결재시 발생한 대행수수료 ○ 교통비 등 결재 취소, 변경시 발생한 수수료 ○ 참여인력표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의 출장경비
	[주의사항] - 항공 제외한 택시비, 일반버스 등 교통은 불인정 - 대행사이트(인터파크, 하나투어 등) 통한 구매시 발생한 수수료는 불인정 - 결제(예약) 취소, 변경시 발생한 수수료는 불인정 - 여비 등 규정은 사업지침을 따라야 하며, 초과지급된 금액은 불인정함		

[별표 2]

집행내역별 불인정 기준

구분	공통사항
불인정기준	o 협약체결일 이전 또는 협약된 지원종료일 이후 집행한 금액 ※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집행한 금액은 인정 가능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약정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대표자 본인이거나, 대표자와 인척관계(4촌 이내)인 사업장과 거래한 경우 o 용역비, 임차비를 개인과 거래한 경우 o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o 부동산임차료, 공과급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없는 비용 o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지원금을 지출한 경우 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공통사항	**o 모든 지출은 건별로 내부기안문 필수 첨부** **o 증빙: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o 현금, 간이영수증, 수기영수증 인정 불가.**